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43 발의연월일: 2021. 2. 16.

발 의 자:정청래·김승원·김영호

남인순・소병훈・안규백

유정주 • 윤건영 • 전혜숙

최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노란우산공제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 공제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, 휴·폐업에 나서는 자 영업·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음.

특히 소상공인의 80%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고, 한길에 놓인 4개 점포 중 3곳이 폐업하는 등 펜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휴·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·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함.

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포함시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)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그 밖에"를 "제1항제3호에 따른 폐업지원 금의 수급조건·지급기준·산출방법·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과 그밖에"로 한다.

3. 폐업지원금 지급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	제12조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
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	원) ①
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	
공인(이하"폐업 소상공인"이라	
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	
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	
할 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폐업지원금 지급
<u>3.</u> (생 략)	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	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폐업지
센터의 설치・운영에 필요한	원금의 수급조건·지급기준·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산출방법·지급절차 및 시행기
	<u>간 등과 그 밖에</u>